<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URBAN FOOTBALL PARK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4077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4/06/0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13	www.urbanfootball.co.kr urbanfootballofficial@gmail.comf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정 보 공 개 서

'어반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어반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13,1815호(범천동,한라시그마타워)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 010-2050-9943
가맹사업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 010-2050-9943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어반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어반스포츠 코리아 주식회사	어반풋볼파크 (urban football park)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13,1815호(범천동,한라시그마타워)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24.07.29	2024.07.29	조현수	010-2050-9943	
	법인등록번호	180111-1573393	사업자등록번호	325-86-0340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해당사항없음					
			대표자	대표번호	대표 팩스번호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어반풋볼(urban football)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2024.10.2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750-1,750-32	조현수
가맹본부가 계열 기업을 합병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어반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	
상 호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OO점	
상표(서비스표)	URBAN FOOTBALL PARK	
광 고	해당사항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사항 없음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2022				-		
2023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조현수	대표	2020.09.01~현재	대표	사업총괄
	이관용	사내이사	2024.07.29~현재	이사	회계.자금
	김미숙	감사	2024.07.29~현재	감사	가맹점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상근	비상근	0
	1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호	구분	기간	사업내용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이미지)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소유자	등록만료일

			등록번호	(등록신청자)	(사용기간)
상표권	상표권리	출원일자 2023/12/19	출원번호 40-2023-0231097	조현수	2034/10/14
		등록일자 2024/10/14	등록번호 40-2261174		

Ⅱ. 가맹본부의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1.11.17

2.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어반스포츠 코리아 주식회사	어반풋볼파크 (urban football park)	조현수	2024.10.29 ~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3,1815호(범천동,한라시그마타워)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어반풋볼 (urban football)	어반풋볼파크 (urban football park)	조현수	2021.11.17 ~ 2024.10.2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750-1,750-32

3.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어반풋볼파크 (urban football park)	대분류	소분류
	스 포 츠 관 련	축구 , 풋살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비고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2	2	0	2	2	0	4	4	0	
서울	-	-	-	-	-	-	-	-	-	
부산	2	2	0	2	2	0	4	4	0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세종시	-	-	-	-	-	-	-	-	-	

** 위 가맹점수와 직영점 수는 인수전 개인사업자 현황이며, 2024년 7월에 설립된 법인이 인수한 현황은 차후 기재할 것입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가맹점 수

당사는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	1	0	0	0	2
2022	2	0	0	0	0	2
2023	2	2	0	0	0	4

6.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외에도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없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 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한명이 전년도 말 올리 연간 평균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연매출액	면적 3.3m²당	연매출액	면적 3.3m²당	
전체	4	141,396	309	331,682	430	20,506	103	
서울	-							
부산	4							5곳미만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매출액은 가맹점당사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4	59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별도의 지역본부(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직전사업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예치기관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BIFC 금융센터	프랜차이즈담당 부서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204호	1588-5000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의 표와 같은 금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가맹비, 무형재산권	5,500~110,000	계약체결 후 즉시	가맹점 오픈 전 해약시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교육비	개점전 교육비	2,200		교육시작 3일 전 계약해지 시	교육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총계		7,700~112,200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VAT 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10,000~100,000	계약 후 즉시	가맹금의 미지급, 계약기간 중 대금의무 불이행 등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가맹비	5,500~110,000
개점 전 최초교육비	2,200
계약이행 보증금	10,000~100,000
합계	17,700~212,2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단위:천원)	3.3㎡ 기준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풋살장 시공비(1면)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리더그린)	77,000~12 2,000	504~846	가맹계약서계 약시	공사 전 계약취소	공사직전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공사시작 및 설치후 반환불가	300㎡~800㎡ 기준
부대시설(간판 ,랩핑,탈의실 벤치등)	상동	11,000	45~122		상동	상동	
사무실,철거, 화장실,조끼, 베너,냉난방기 ,전화기,컴퓨 터등	자율	-	-	-	-	-	어반풋볼 조끼 사용은 필수/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따라 변동될수 있음
홈페이지개설	가맹본부	무료제공	-	-	-		
총계		88,000~1 33,000	549~967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장의 운영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사는 반드시 본사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 무상A/S 기간은 제조·판매 회사의 기준에 정한 것으로 하며, 무상A/S 이외의 보존유지 비용은 "을"이부담하고 자체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시공 관련 모든 사항은 "을" 과 협력 시공업체가 체결한 계약서를 따른다.

※ 별도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지시에 따라 구장 내.외부 및 사무실에 광고, 배너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한다.
(추가적인 지시는 협의후 진행한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2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계약 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80%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점포면적에 따른 외견상의 조언과 해당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며 당사에 점포물색을 의뢰시 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귀하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선정이 완료되어 귀하가 입지 선정의 주체가 됩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이상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한 내역은 첨부한 목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9)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총매출(소셜매치+구장대관 등)의 11~33%	익월 10일	없음	없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V-9-1)에 따라 참고	협의	광고 미시행	광고 시행 후	-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V-9-1)에 따라 참고	협의	판촉 미시행	판촉 시행후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가맹본부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협의	미반환	변경설치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실비	협의	교육	교육	

				미시행	시행 후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교체 후	
점포환경개선비용	해당업체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 관리& 사용 비용	가맹본부	매출의 3%~7%				VAT별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리, 감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내 용	빈도/시기	담당팀	비고
운영관리	- 가맹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가맹점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 - 운영방법 및 계획 파악을 위한 면담 및 자료요청 권리	수시	수퍼바이져 /당사의 임직원	문의: 가맹본부
회계관리	- 회계장부(포스) 등 경영전반에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시	수퍼바이져 /당사의 임직원	

시설관리	- BI적용 및 낙후 시설 개선 요구의 권리	수시	수퍼바이져 /당사의 임직원	
위생관리	-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매장과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수시	수퍼바이져 /당상의 임직원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주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시에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38조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①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수 경우 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겨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 잔여 계약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중 인력지원 및 매뉴얼 제공 대가	0	VAT 포함
교육비	2,200	VAT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10,000~100,000	VAT 해당없음

나. 신규 계약 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5,500~110,000	VAT 포함
교육비	2,200	VAT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10,000~100,000	VAT 해당없음

4)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홍보매뉴얼, 전산 및 매장관리솔루션, 문서, 도면,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마.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접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가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6 VS 6 2 시간	-왼쪽에 기재된 상품 및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5 VS 5 2 시간			
4 VS 4 2 시간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아카데미 운영	당사의 규정에 따른다.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소셜매치 참가비, 대관금액,환불취소규정 등 비용/가격등 규정	당사의 규정에 따른다	
가맹점운영시	가맹점사업자는 어반풋볼 홈페이지, 플랫폼 등 본사시스템만 이용 할 수 있다.(다른 플랫폼 및 자체 홈페이지, 자체 매치 이용불가)	
물품 (풋살화, 풋살공, 조끼,생수, 음료수등)	당사의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에게 의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조 끼	반드시 당사가 지정한 디자인대로 이용한다.	
고정소셜매치	일정은 당사가 요청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승낙하는 경우 추가 될 수 있다. (아래 “철수 요구 가능조건 항목에 따라 철수가 가능하다 -최소횟수 : 1면당 피크타임(20시 or 21시) 주 4회이상필수(평일 최소 3회)해당조건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최소조건이며 진행률에 따라 당사는 위 최소횟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고정 소셜매치 최소 횟수’ 철수요구 가능조건	기상,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된 매치를 제외하고 최근 2개월간 50%미만의 진행률이 나오는 경우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양방 해당타임 고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향후 2개월간 해당타임 유예기간을 갖고, 당사는 이후 재시도를 할 수 있다. 단, 해당타임에 유예기간 중 장기대관이 있는경우는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요청 을 거절 할 수 있다.	
변동 소셜매치	가맹점사업자의의 매출극대화(공실최소화)를 위해 대관과 소셜매치를 모두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소셜매치이다. 대관으로 인해 변동 소셜매치 취소가 가능한 조건은 당사의 규정에 따른다. 약7일전부터 당사는 ‘변동 소셜매치’ 추가 할 수 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소셜매치 진행 시 정산금	가맹계약서를 따름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 소셜매치 참가비 등 소셜매치 플랫폼 운영에 대한 권한	당사에 있음	
운영관련	신규창업 시 및 가맹시작 시 3~6개월 간 소셜매치 참가비 이벤트 필수 (본사가 1인 참가비 0~70% 범위에서 고지) -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해당 달 로열티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부가세 별도) 1)월세1000만원 이하: 매출이 월세의 1.1배 이하인경우 2)월세1000만원 초과: 본사의 별도고지	
시공관련	- 공사 무상A/S 기간은 제조·판매 회사의 기준에 정한 것으로 하며, 무상A/S 이외의 보존유지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부담하고 자체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 풋살장 시공 계약의 발주 주체는 “을”이며, 관련 모든 사항은 가맹점사업자와 협력 시공업체가 체결한 계약서를 따른다. - “을”은 풋살장 추후 보수 및 잔디교체 등의 경우 당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공사를 의뢰한다. (타 업체 또는 자체공사 불가)	
임대차 관련	임대차 계약의 임차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이므로, 임대차 관련 모든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기로한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 천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품명		변경 시 통지	
6 VS 6 2시간	12 만원(시간당 6 만원)		
5 VS 5 2시간	11 만원(시간당 5.5만원)		
4 VS 4 2시간	10 만원(시간당 5 만원)		

※ 권장가격 이외에 이벤트 할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행사 등 가격할인 행사, 가격변동에 관한 사항은 영업환경변화에 따라서 당사가 가맹점주에게 고지합니다.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강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스포츠 중 축구(축구장), 풋살(풋살장)	어반풋볼파크 (urban football park)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반경 300m	-> 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

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홈페이지)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기간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갱신 시에는 계약이 3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다만,계약기간은 3년씩 연장되며 갱신비가 발생함)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5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ㄱ.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ㄴ.가맹본부가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6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6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24조3항	

	/ 25조 1항	36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2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3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4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제한 미준수·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 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5조,30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7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14조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2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3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4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4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0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14조,19조,25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6조 1항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6조 3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 해지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의 경우 종전 계약기간을 포함)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6조 2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불정지 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	36조 4항 각호

치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은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

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스포츠중 축구(축구장),풋살(풋살장)을 전문으로 하는 동종의 업	해당 없음	문의 :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협의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팀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운영팀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주문→친절도 확인→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품질확인→관리표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50%	50% (전체가맹점)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전국광고(TV,라디오, 5대 일간지 등)
	서비스/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지역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개별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단독광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행사 시행→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동	상동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상동	상동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2013년 자료 없음)	상동	상동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전단지, 카다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사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귀하가 물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본 계약에 의한 교육의 대가를 받고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받은 금액의 2배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당사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 후에 당사의 동의 또는 승낙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계약 종료 전의 영업장소로부터 반경 2㎞ 이내에서는 해당 가맹점을 포함하여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체를 운영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1일당 삼십만 (₩3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 “을”이 로열티 등 대금을 2기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로열티 원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 연체금액의 20%)

8) 잔디 손상 및 구조물 문제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이 되거나, 신규구장과 비교했을 경우 차이가 날 경우, 회원들은 지속적인 교체요구 및 민원이 있을 경우, 실제로 회원이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안정상의 문제로 본사의 잔디교체 및 구장보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을"의 비용으로 교체해야한다.
본사의 잔디교체 및 구장보수작업 요청이 있었음에도 12개월 내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을은 갑에게 하루 6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약 15일	-
면접	- 개점관련 상호 의견 조율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 입지 주위 1차 시장조사		-
최종 협의 가맹계약 체결	- 개점 승인 - 계약 체결 (필수 서면 제공 14일 후)		-
가맹금 예치	- 은행에 초기 가맹금 (가맹비/교육비/보증금) 입금	약 30일	-
가맹점 입주건물확정	- 입주 계약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인테리어/간판/기기/	- 공사 실시		

물품 구입	- 오픈 초기에 필요한 기기/물품구비/간판		
인력 배치	- 가맹점 오픈에 필요한 인력 구인		-
교육 실시	- 사전 입문교육 실시		-
홍보 실시	- 가맹점 오픈 전 홍보		-
가맹점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시작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되는 실비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상의 소요금액은 점포 임대관련 비용,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급기)공사, 소방설비, 냉난방기/오디오 구입비용은 별도입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별도의 경영상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종류		주요내용	교육생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전 최초교육	기능교육	플랫폼 교육	가맹점사업자	이론/실습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하기 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교육
	가맹점 운영 교육	매장운영에 필요한 운영능력 향상 프로그램	가맹점주/ 관리자	이론 교육		
정기교육	운영교육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가맹점사업자	이론/ 실습교육 (정기)	교육실시 30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비정기교육	특별교육	리뉴얼 교육	가맹점사업자	이론, 실습교육 (비정기)	교육실시 14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어반풋볼파크(urban football park)]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최초교육	플랫폼교육 가맹점 운영 교육			
정기교육			실비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비정기교육			실비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계약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끝-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600-260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물품 리스트]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1.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품목(이하 구입강제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와 같다.
2. 위 제1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은 신제품 출시, 기존 제품 철수 등의 사유로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별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해야 한다. 단, 구입강제품목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맹본부의 운영상황에 따른다.

[별지1]

2024년 10월 1일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지2]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

2024년 10월 1일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비용 요인에 대한 설명

마진은 가맹본부가 가격 변동 가능성, 시장 내 경쟁력, 투자 여력 확보 등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가맹본부 회사명		영업표지 (브랜드)	
제공확인	작성 예시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란)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3)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4)가맹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띵동 제주대패랑 옛날갈비본점]
대표 (인)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서 수령날짜 및 가맹거래사 자문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띵동 제주대패랑 옛날갈비]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20 년 월 일에 제공받고, 가맹계약서는 20 년 월 일에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①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 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①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